

# 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교육감
2. 건 명 :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 
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불 임 참 조
4. 검 토 의 견 : 불 임 참 조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11월 26일

교육사회위원회  
전문위원 안문환

#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이 조례안은 2007년 11월 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제안이유

공유재산심의회 위원에 외부위원을 추가하여 심의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,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에 외부위원 2인을 추가하여 심의회위원을 7인과 9인으로 함(안 제5조).
- 나. 재난시설심의회에서 증·개축하기로 결정된 재산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- 다. 잡종재산의 대부업무를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, 대부료를 학교회계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, 제25조).
- 라.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 한도를 70%에서 50~30%로 함.(안 제34조).
- 마. 토지의 지하·지상공간 사용료 및 분수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,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함(안 제31조, 제45조, 제63조).

바.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범위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정비함(안 제41조).

사. 인용 범명 및 조문을 정비함(안 제2조, 제30조, 제40조).

### 3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에 외부위원의 추가, 잡종재산 대부료의 학교회계 취급, 폐교재산 대부료의 감액비율 한도 조정,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지급금액 상향조정, 인용범명 및 조문정비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,

#### 주요 내용은

- 인용 범명 및 조문 정비
- 제5조는 교육감 및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심의회위원을 “5인과 7인”을 “7인과 9인”으로 함.
- 제6조는 재난시설심의위원회에서 철거, 개축 등으로 심사 결정된 재산의 용도변경·폐지 및 처분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- 제34조는 「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의 범위를 정함.
- 제41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범위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맞게 함.
- 제45조는 분수림의 설정 관련규정을 삭제하고,
- 제63조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상향 조정함.

##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과 조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정비하였으며,

입법예고시 의견제출 내용의 반영 사항인 외부인원 2명을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으로 추가하였으며,

2007년 8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달된 공유재산관리 조례 표준개정(안)에 의해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